

『구미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·김민성 의원

2. 찬 성 자 : 강승수 의원 외 9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이나 직원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조례의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2조 및 제3조)
- 소송비용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소송비용 지급과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◆ 구미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이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 중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건전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◆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미시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이 공익적 의정활동이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 장려 및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.
- ◆ 특히, 직무 관련 소송에 대한 개인적 부담이 과도할 경우 소극 행정이나 의정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범위 내 소송비용 지원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.
- ◆ 최근 지방의회 의원들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·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,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거의 없음.
- ◆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·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.
- ◆ 본 조례안은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중에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, 선지급 이후 유죄 판결 또는 환수 사유 발생 시를 대비한 환수절차의 엄격한 관리와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